

---

# 202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

---



2021. 3.

**서 울 대 학 교**  
**[감 사]**

# I. 202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현황

## □ 감사 운영 방향

- 5년 이상 종합감사 미실시 기관 감사
- 본부 주관 부속 시설 등 내부통제 기능이 취약한 기관 감사

## 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- 실시 기관(대상기간 : 2020. 3. ~ 2020. 7.)
  - 종합감사(5개 기관) : 단과대학 및 부속 연구시설, 본부 부속시설
- 감사결과 조치사항
  - 신분상 조치 : 9건 10명
  - 시정 : 10건(재정 8건, 1,777,764천 원 포함)
  - 경고·주의(기관) : 25건
  - 통보 : 11건

## II.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

### 1 교원 창업 벤처기업 특허 출원 부적정

-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,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하고,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야 함에도,
  - ○○○의 A교수는 본인이 공동 발명한 특허 17건을 산학협력단에 발명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발명진흥법,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,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]

## 2

## 공사 계약 및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

- 계약담당직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지정·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(조달청 G2B시스템 등)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고,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가격의 적정여부(시장조사,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등 참조)를 반드시 확인·검토하여 계약상대자 결정·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공사 준공 처리 시에는 법령에 따라 각종 보험료, 산업안전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정산한 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,
- ●●●에서는 2019. 8. 및 2019. 12.에 2건 62,376,000원의 공사를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, 2015. 3.부터 2019. 12.까지 3개 업체(Aa, Ab, Ac)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, 해당 업체가 동일 또는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, 위 3개 업체 상호 간에 제출되는 비교 견적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2016. 1.부터 2019. 12.까지 13건의 공사(총 공사비 219,264,377원)에 대하여 별도의 제 경비 정산 없이 정산 처리하여 보험료 5,819,893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.
  - ○○○에서는 2015. 3.부터 2020. 2.까지 시행한 37건의 공사(총 공사비 650,516,590원)에 대하여 정산 서류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 제 경비 중 보험료 4,155,362원 및 폐기물 처리비 11,900,405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]

### 3

## 수당 지급 부적정

### □ 자기소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

○ 예산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, 법인 교직원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,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 등 별도의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,

- ◇◇◇에서는 법인회계 사업을 연구과제 형태로 운영하면서, 2015년도에는 각 부의 부장을 공동연구자로 임명한 후 매월 연구자수당을 150,000원씩 지급하였고,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원장에게는 연 1~3회, 각 부장에게 매월 자료조사, 통계분석 및 감수 자문료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.
- ○○○에서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말, 부학장에게 500,000원, 행정실장에게 400,000원, 부서별 팀장에게 300,000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발전기금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,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,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]

### □ 근거 없는 보직 신설 및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

○ 대학(원) 내에 둘 수 있는 보직자의 종류 및 수는 학칙 및 상위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,

- ○○○에서는 학부(과)마다 학칙 등 규정에 없는 부학부(과)장 보직을 두고 학부(과)별 1명~4명의 부학부(과)장을 학장이 임명하여 간접비에서 인당 200,000원 ~ 300,000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## 4 법인 재산 등 관리 소홀

### □ 공용차량 임의 사용

- 업무용 차량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, 교직원은 차량, 부동산 등 서울대학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안 됨에도,
- ●●●의 B는 공용차량을 2회(2019. 4. 26.~29., 2019. 5. 17. ~18.)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교통 관리 규정,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]

### □ 미술품 관리 소홀

- 본교 내 미술품은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있고, ○○○○의 소장품심의위원회는 미술품의 기증, 구매, 관리전환과 미술품의 적정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, 소장미술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함에도,
- ○○○○은 2017년부터 미술품 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안내 받았으나 2020년까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, 보유 미술품 총 717점 중 약 61%인 437점의 적정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으며, 소장미술품 중 2점은 소재불명, 2점은 작가가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등 미술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서울대학교, ○○○○ 소장품심의위원회 운영세칙, 서울대학교 ○○○○ 미술품 수집 및 관리 세칙 등]